

학생생활관운영규정

제정 : 1998.03.01

개정 : 2008.12.17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7.05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의 숙달을 통한 인격도야와 학문의 정진을 위하여 본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학생생활관(기숙사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2조(명칭) 생활관의 명칭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 학생생활관(이하 “생활관” 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 <개정 1998. 05. 01., 1999. 10. 18., 2008. 12. 17., 2011. 11. 22., 2020. 03. 01.>

제3조(개관기간) 생활관의 개관 기간은 본 대학교 「학칙」에 규정된 수업 기간으로 하되 학생생활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4조(시설이용) 생활관의 시설물 이용은 사생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그 목적이 타당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5조(사생활동) 학생생활관장은 사생의 활동이 질서 있고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03. 01.>

제6조(사생수칙) 학생생활관장은 생활관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생활관 사생 수칙을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 03. 01.>

제2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설치)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 05. 01.>

② 위원장은 학생생활관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2. 생활관 사생수칙에 관한 사항
3. 생활관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4. 생활관 사생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
5. 생활관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사항
6.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본 회의를 소집하며,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05. 01.>

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,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3장 조직 및 임무

제11조(조직) 생활관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요원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학생생활 관장 : 1명 <개정 2020. 03. 01.>
2. 매 니 저 : 10명 이내 <개정 2017. 05. 01.>
3. 직 원 : 약간명
4. 용 원 : 약간명

제12조(학생생활관장의 자격) 학생생활관장은 교수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13조(임무) ① 학생생활관장은 소속직원 및 매니저를 지휘 감독하고, 사생을 지도 감독하며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20. 03. 01.>

② 직원은 학생생활관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0. 03. 01.>

③ 학생생활관장은 생활관의 당해 사업년도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 03. 01.>

제4장 입사자격 기준 및 퇴사

제14조(입사자격) ① 생활관의 사생 배정은 각 학과의 재적 학생수 비율에 따라 공평히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재학생은 학업성적, 원거리,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
③ 신입생은 원거리, 입학성적,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
④ <삭제 2017. 05. 01.>

⑤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생활관에서 지정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05. 01.>

⑥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입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12.01.>

1. 입사신청서(원서)
2. <삭제 2017. 05. 01.>
3. 소정의 서류 <신설 2017. 05. 01.>

제15조(입사자격 제한 및 우선권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자격을 제한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학사경고를 받은 자
2.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3. 퇴사처분을 받은 자
4. 법적 전염병 환자 및 단체생활에 적합치 못한 질병 보유자
5. 휴학 중인 자
6. 기타 학생생활관장, 학과장 및 지도교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. <개정 2020. 03. 01.>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우선권을 준다.

1. 보훈자녀
2.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: 동일한 조건하에서 우선권을 준다. <개정 2021. 12. 01.>
3. 지체부자유자 : 우선권을 주되 심사에 의하여 입사를 결정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6조(경고처분) 사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생활 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사생활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
2. 규칙 및 사생활 수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할지라도 생활관의 질서유지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

제17조(퇴사)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고 학생생활관장은 이를 허락한다. <개정 2017. 05. 01.,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18조(퇴사조치)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퇴사 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학칙에 의하여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
2. 생활관 사생활 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
3. 사내서 음주 또는 흡연 후 사내를 출입하여 질서를 어지럽힌 자 <개정 2020. 03. 01.>
4. 심야(22:00~05:00)에 타실을 방문한 자 및 사내를 무단 이탈한 자
5.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6. 학생생활관장에게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 <개정 2020. 03. 01.>
7.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한 자
8. 외부인을 동반하여 출입한 자
9. 고성방가, 음주행위, 도박행위 및 집단행동을 한 자
10. 납부금을 10일 이상 체납한 자
11. 매니저의 지도에 이유 없이 불응한 자.

제19조(식비) 식비는 1개 학기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, 매 식사 시 서명하여야 한다.

제20조(세입) ① 학생생활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상 필요한 입관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생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
1. 관리비
2. 식비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(위원회 결정)

② 일단 납부된 전항의 납부금은 퇴사를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식비는 제외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21조(세출) 관리비는 생활관 운영비로서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시설물 등 사생 후생복지에 충당한다. <개정 2020. 03. 01.>

제22조(회계년도)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23조(점호 및 폐문) 사생은 생활관의 지정된 점호 및 폐문 시간 23:00를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05. 01. 2021. 12. 01.>

제24조(식사) ① 식사시간 외에는 배식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사전에 학생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 03. 01.>

② 식당의 집기 등을 식당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지 못한다.

③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 및 물품을 식당에 휴대할 수 없다.

④ 식당 출입 시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.

제25조(점호) 사생의 점호는 매일 지정된 점호시간에 실시하며, 비상점호는 비상시에 실시한다.

제26조 <삭제 2017. 05. 01.>

제27조(외박 및 외출) ① 외박은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매니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 05. 01.>

② 휴일(토요일 포함)의 외출 및 외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관장 또는 매니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 05. 01., 2020. 03. 01.>

③ 외출 및 외박을 한 사생은 귀가일의 점호시간까지 귀가하여야 하며 귀사 즉시 외출·외박부에 기입하고 학생생활관장 또는 매니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05. 01., 2020. 03. 01.>

제28조(면회규정) ① 평일(월요일부터 금요일)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허용치 않으며, 휴일의 면회시간은 09:00부터 21:30까지 한다.

② 면회 신청자는 면회록에 주소, 성명, 사생과의 관계 및 지정 호실을 기입하여야 한다.

③ 면회는 지정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호실의 출입을 금한다. 다만, 가족이 방문하였을 때는 매니저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29조(비품 및 시설물 이용) ① 각 호실의 비품이 못 쓰게 됐을 경우 학생생활관장 또는 매니저에게 보고한 후 교환을 할 수 있으며,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05. 01., 2020. 03. 01.>

② 생활관 벽에 못을 박거나 규정된 이외의 시설을 할 수 없으며, 공용물의 파손, 분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한다.

제30조(금지사항) ① 생활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대리 입사 행위
 2. 집기 무단 이동 및 가공 행위
 3. 기물 파손 행위
 4. 실내에서 전열기 사용 및 취사 행위
 5. 생활관 내부와 주변을 불결하게 하는 행위
 6. 기타 사내 생활과 학원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다른 입사생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위
- ② 사생 외에는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본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숙식할 수 없다.

제5장 사생 자치회

제31조(구성) 학생생활관장은 생활관에는 사생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사내 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20. 03. 01.><개정 2020. 03. 01.>

제32조(생활관비 청구 및 환불규정) 생활관비의 청구 및 환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관리비 및 식비납부 : 최초 주단위 금액에서 감면 후 청구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2. 관리비 환불 : 조기 퇴사시 미사용분은 주단위 금액을 환불한다.(100%), (다만, 폐관 2주 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.) <개정 2021. 12. 01.>
3. 식비환불 : 조기 퇴사시 미식수분은 주단위 금액을 환불한다.(100%), (다만, 폐관 1주 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.) <개정 2021. 12. 01.>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